



유럽공동체의 환경마크제도

(연재 I)

李英姬 / 工學博士, 國土開發技術士

1. 서 언

지난 1월, 2월에 걸쳐 본지에 환경마크와 이미 15년간의 경험을 한 독일연방공화국 (이하 독일이라 함)의 환경마크에 관하여 논술한 바 있다.¹⁾ 그간 유럽공동체(EC)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자체의 환경마크를 개발하였으며, 유럽공동체 수준의 환경마크제도의 실시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 1992년 3월 23일 공포하였다.²⁾

유럽공동체의 환경마크는 특히 생산전 원료의 선별을 포함하여 제조에서부터 분배, 소비 및 사용을 거쳐 사용후 처리까지의 ("cradle-to-grave")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산물의 총생활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보다 적게 영향을 미치는, 소위 환경친화성의 생산물에 부여되게 된다. 각 단계에서 모든 환경매체에 대한 영향이 고려된다. 생산물그룹과 환경기준의 확정에 대한 절차 및 환경마크의 부여 절

차는 아래에 상세히 기술된다.

이 환경마크제도는 환경보호를 위한 시장경제적 접근 도구를 통하여 연구 및 개발, 특히 청정기술 분야 및 기술혁신에 기여하게 되며, 소비자는 산물의 긍정적인 환경특성에 관하여 보다 나은 정보를 얻게 된다.³⁾ 이와 함께 유럽공동체는 동시에 그들의 제5차 활동프로그램에서 강조한 환경질의 개선을 위한 경제적 도구의 강화와 이의 실현을 위하여 활용하게 된다.⁴⁾

환경에 보다 영향을 덜 미치는 생산물에 관한 정 보에 대하여 공공의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으며, 몇몇 회원국가들은 이미 그러한 생산물에 대하여 자체의 환경마크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여러 회원국가들도 이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⁵⁾ 1993년 중에 시중에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유럽공동체 환경마크⁶⁾는 이와 같은 개별 회원국가 자체의 환경마크와 병존하여 부여되게 된다.⁷⁾

- 1) 李英姬 : 환경마크에 대한 논쟁—독일연방공화국 사례, 환경보전, 1993년 1월호 p. 38 pp. 및 2월호 p. 32 pp. 참조.
- 2) 환경마크 부여에 대한 공동체 시스템, 1992년 3월 23일 시행령 (EEC) No. 880/92. 1992년 4월 11일 유럽공동체 관보 No. L 99/1.
- 3) 환경마크제도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논쟁에 대해서는 1977년 본 제도의 실시를 확정한 후 오늘날까지의 경험을 통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사례 참조: 이영희 : 환경마크에 대한 논쟁—독일연방공화국 사례, 환경보전 1993년 1월호, p. 38 pp. 및 1993년 2월호, p. 32 pp.
- 4) 유럽공동체의 제5차 활동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이영희 : 환경보호를 위한 유럽공동체의 새로운 프로그램, 환경보전 1992년 10월호, p. 27 pp.
- 5) 예를 들어, 독일은 이미 15년전부터 환경마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자체의 환경마크를 개발하였고, 네델란드는 1992년 11월에 도입하였음.

2. 유럽공동체 환경마크 규정의 배경

유럽공동체는 그간 제4차에 걸친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체수준의 활동프로그램⁶⁾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확정된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본원칙은, 가능한 한 환경침해를 제거하고 원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야기자원칙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환경보호 제4차 활동프로그램(1987~1992)⁷⁾에서는 청정산물에 대하여 정책의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90년 5월 7일의 결정⁸⁾으로 의회는 위원회에 산물의 총 생활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친화적인 산물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수준의 환경마크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제안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유럽의회는 폐기물관리 및 알트라스텐(Altlasten : 고폐기물매립·적재지 및 고산업입지와 군부대이전부지 등)에 관한 1987년 6월 19일 그의 결정⁹⁾에서 환경에 친근한 산물에 대하여 유럽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원하였다.¹⁰⁾

환경마크 부여시스템은 환경에 친근한 대안을 지원하고, 사용자와 소비자가 구입을 결정할 때에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는 산물로 결정을 하도록 방향을 주게 된다. EC의 동 규정은 환경마크 부여에

대한 공동체 시스템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수행하게 된다.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개별회원국가의 독립된 기존의 부여시스템 또는 장차 개별적으로 갖게 될 부여시스템은 계속 병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유럽공동체 규정의 전제에 상응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EC위원회는 아직 회원국가 자체의 환경마크규정의 효력상실 등에 대한 가능성은 명백히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한 유형의 조화와 통일화는 개별 회원국가의 규정의 어느 맨가의 효력상실을 시사하고 있다.



6) 유럽공동체의 환경마크 :

7) 본 시행령의 실시와 더불어 개별국가 규정의 효력상실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음. 독일의 환경부처에서는 EC의 환경마크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EC 국가에서 환경에 친화적인 산물의 생산과 구입에 시장경제적인 도구의 활용이 촉진되며, 회원국가 자체의 마크와 EC 마크의 병존을 통하여 선의의 경쟁에 박차를 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독일 환경마크의 부여수준에 자극을 고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8) 1973년 12월 20일 유럽공동체 관보 No. C 112, p. 1; 1977년 6월 13일 유럽공동체관보 No. C. 139, p. 1; 1983년 2월 17일 유럽공동체관보 No. C 46, p. 1; 1987년 3월 18일 유럽공동체관보 No. C 70, p. 3.

9) 1987년 12월 7일 유럽공동체 관보 No. C 328, p. 1.

10) 1990년 5월 18일 유럽공동체 관보 No. C 122, p. 2.

11) 1987년 7월 20일 유럽공동체 관보 No. C 190, p. 154.

12) 알트라스텐(Altlasten : 고폐기물매립·적재지 및 고산업입지와 군부대이전부지 등)에 관한 문제는 최근 유럽에서 크게 문제화되고 있는 테마임. 동유럽권의 체제 붕괴후 이에 대한 실상이 조사, 밝혀짐에 따라 더욱 중요한 정책테마가 되고 있음. 특히 동·서독일 통일후 독일에서 심각한 환경문제 (토지문제 포함)의 하나가 되고 있음. 이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이영희 : 독일연방공화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도구—다매체포괄환경정보시스템을 도구로 한 합리적 예방환경정책의 측면-, 녹원출판사, 서울 1992, p. 90 pp. 특히 p. 101 p.; 이영희 : 독일연방공화국의 토양보호정책과 토지보호법, 환경과 조경, 1991년 11~12월호, p. 136 pp.; 이영희, W. Bueckmann : Altlasten als neues Problem des Umweltschutze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국토연구, 1991년 12월호, 국토개발연구원 발행, p. 173 pp.; 이영희 : 토양보호를 위한 위험한계치 작업에 있어서의 문제점, 환경과 조경, 1992년 4월호, p. 136 pp.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개별회원국가의 독립된 기존의 부여시스템 또는 장차 개별적으로 갖게 될 부여시스템은 계속 병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유럽공동체 규정의 전제에 상응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EC위원회는 아직 회원국가자체의 환경마크규정의 효력상실 등에 대한 가능성은 명백히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한 유형의 조화와 통일화는 개별 회원국가의 규정의 어느 땐가의 효력상실을 시사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통일적인 환경마크 부여시스템은 중요한 관계 분야의 관심을 참작하며, 산물그룹과 각 개별산물그룹에 대한 전문적인 환경기준을 정할 때에 이들의 적절한 참여를 대비하고 있다.

3. 주요 개별규정

3.1 기본규정

동 규정 제1조 목표조항에서는 본 시행령을 통하여 환경마크의 부여에 대한 공동의 시스템이 확정되며, 이 시스템을 통하여 산물 내지는 고용인의 안전이 위해되지 않고, 산물의 총 생활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보다 덜 미치는 그러한 산물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이의 사용이 촉진되어져야 하며, 또한 소비자가 산물을 통한 환경오염에 관하여 보다 잘 알게 되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4조의 일반 기본원칙에서는 그 제1항에서 환경마크는 제1조의 목표 및 건강, 안전과 공동의 환경전홍에 상응하는 산물에 부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산물에 대해서는 환경마크가 부여되지 않는다:

- 위험한 물질 또는 67/548/EEC¹³⁾ 및 88/379/EEC 지침¹⁴⁾의 의미에서의 위험물질 또는 조제가 다루어지는 산물

- 절차에 따라 생산된 산물이 사람과 또는 환경에 현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산물

제4조제3항에서는 유럽공동체이외의 국가에서

들어온 산물에 대한 환경마크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본 규정에 의하여 환경마크의 부여를 신청하게 되는 공동체에 도입되는 산물은 적어도 공동체에서 제조된 산물의 제조에서와 같은 엄격한 기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사원 모집

당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업과 산업기계, 운반기계, 소각로 등을 전문 제작하는 업체로서 사세확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능한 인재를 모집코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직종\급급 | 중역 | 간부 | 사원 | 근무지 | 비고 |
|-------|----|----|----|-------|-------------------------|
| 영업직 | 0 | 0 | 0 | 서울·파주 | 본업종 유경험자우대 자격증소지자 우대 |
| 기술직 | 0 | 0 | 0 | 서울·파주 | |
| 생산직 | 0 | 0 | 0 | 파주 | 본업종 유경험자우대 |

2. 기 간: 1993. 6.30~1993. 7.10.

3. 제출서류

- 1) 이력서(사진첨부) 1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
- 3) 졸업증명서 1부
- 4) 자격증 사본 1부

4.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2133번지

기화공업(주) 관리부

한국기계공업(주)

TEL : (02)594-4077~9, (0348)53-3212.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기화공업주식회사

13) 1967년 8월 16일 유럽공동체 관보 No. L 196, p. 1. 1991년 8월 17일 최종개정 관보 Abl. No. L 228.

14) 1988년 7월 16일 유럽공동체 관보 No. L 187, p. 14.